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참 고 자 료**		http://www.motie.go.kr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2018.5.3(목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기위원회
담당과장	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 김화영 사무국장(044-203-4590)	담 당 자	정대환 사무관(044-203-5163) 이병율 사무관(044-203-4597)

산업부,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

-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,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,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·시행한다.

◇ 추진배경

□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,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.

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*이 상존했다.

* 개발행위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고,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 때문에 주민 불만 형성

② 풍력발전사업(육상+해상)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들은 풍력발전 사업의 **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**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**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**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.

③ 이 밖에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, 설계 변경 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하여 조감도만 제출토록 하는 **구비서류 간소화**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**준비기간을 축소**해달라는 의견도 반영했다.

◇ 주요내용

□ 이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은 **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**을 중심으로 **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**함으로써, **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**하는 것으로서 크게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.

< 고시 개정 주요 내용 >

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
② 풍력사업 전(前) 풍황자원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
③ 구비 서류 간소화
④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

❶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(前) 사업내용 사전 고지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

○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,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

❷ 풍력 발전사업 이행능력 기준 강화

○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**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**을 위해 **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**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, **풍력 발전사업**에 대한 **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**하고,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**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**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

❸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구비서류 간소화

○ 발전설비 **배치계획 증명서류**는 **조감도로 충분**하나 **설계도까지 요구**하고 있어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

❹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준비 기간 조정

○ 발전사업허가 이후 **준비기간**을 **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**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**소규모 태양광 사업**의 경우 **18개월**로 축소

*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 개월 내 설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기간으로 불필요한 사업지연

□ 특히,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하여 '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*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.

* 제208차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 허가기준 보완 등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허가심의를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 (2017.10.27)

①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

②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*(풍황자원계측기 설치)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

*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 근거

□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“이번 고시 개정은 주**민 수용성 제고**와 **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** 등을 통해 **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**하고 **에너지전환에 이바지**할 것으로 기대하며, **해상풍력 발전사업**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**제도적 기반**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, 태양광·풍력 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.

(동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될 예정)